

제 1353 호

1987. 4. 9

발행인: 서울특별시공공보
편집인: 김진섭
전화: 731-8111~3
인쇄: 서울특별시공공보
전화: 738-4587

제	1353호	발행일자	1987. 4. 9	판권	서울특별시
---	-------	------	------------	----	-------

시보

차례

- ① 규 회
 - 제 2164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공무원상급직의양성교육규칙중개정규칙..... 3
- ② 고 시
 - 제 234 호 : 사료상용등록..... 7
 - 제 242 호 : 연단의최고가격결정..... 7
- ③ 공 고
 - 제 217 호 : 1987년도제2종원거공사업제수감안도속및준위..... 8
 - 제 226 호 : 서울특별시특기활동지역관리조례안입법안..... 8

<이면계속>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민으로서의 책무를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2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공람 10

◎ 구 공 고

마포구제 32 호 : 특정일사용기차재취공열지정취소 15

영등포구제 31 호 : 작린개작및폐기 14

강동구제 25 호 : 편인사용승인 16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 4. 9

서울특별시장 영 보 현 ㉔

◎ 서울특별시 규칙제 2164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 6조를 삭제하고 제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조 (징계의 감경)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분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

는 경우 그 징계처분 및 경고처분의 공적은 징계대상 공적에서 제외하여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경계를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에 관련한 급료수수 및 징계의결 요구기관에서 중점 진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의 외의 의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5급이하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약사 및 간호원(사학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4 제 1호나 제 3호 해당 약사와 별표 2와 5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자는 간호원을 제외한다)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정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직할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정액공사상을 받은 공적
- ②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사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중 구분단의 공중사형준 징계사유, 징계기준란의 12호에 "마약"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구분	징 계 사 유	정 계 기 준					비 고
		과면	해임	정직	감봉	전책	
	마. 영조물 관리대반					전책 이상	

13호의 "라" 목에 (4),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정 제 사 유	정 제 기 준					비 고
		과면	해입	정직	감봉	견책	
	(4) 공사하차점점 불이행 (5) 도로무단굴착 묵인 등					견책이상 견책이상	
구분란의 "3. 세무행정" 중 정제사유, 정제기준란의 1, 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구분	정 제 사 유	정 제 기 준					비 고
		과면	해입	정직	감봉	견책	
	1. 과세누락 ○ 고의 또는 중과실 2. 과세지연 ○ 고의 또는 중과실					감봉 이상 감봉 이상	
구분란 "4. 보건위생" 중 정제사유, 정제기준란의 1, 2, 4, 7, 10, 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구분	정 제 사 유	정 제 기 준					비 고
		과면	해입	정직	감봉	견책	
	1. 식품위생업소 및 환경위생 업소 등 인·허가 위법 부 당처리 2. 의·약업소 및 가정의례업 소 등 인·허가위법 부당처리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 시단속조치 태만 7.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의료업소 및 약업 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10.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보원조 합 인·허가 위법 부당처리 11.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보원조 합 지도감독 소홀					감봉 이상 감봉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견책 이상 견책 이상	

구분란 6 "건축 및 주택"중 정제사유, 정제기준안의 4호 중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정 제 사 유	정 제 기 준				비 고
		과 면	책 일	정 직	감 봉 전 책	
	바. 특정건축물등 부당처리				감 봉 전 책 이 상	
구분란 7 "상수도"를 "상, 하수도"로 하고 구분란 8 "산업행정"중 정제사유, 정제기준안의 8,9,13,15,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정 제 사 유	정 제 기 준				비 고
		과 면	책 일	정 직	감 봉 전 책	
	8. 전기용품제조 및 전기 기공사업 면허취급 부 당처리 9. 공장거래 위반조치 위반 1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 처리 15. 영토제조업소 및 판매 업소인허가 취급부당처리 16. 영토제조업소 및 판 매업소 지도단속 위반				감 봉 이 상 감 봉 이 상 전 책 이 상	
구분란 9 "공원녹지"중 정제사유, 정제기준안에 9,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정 제 사 유	정 제 기 준				비 고
		과 면	책 일	정 직	감 봉 전 책	
	9. 녹지대, 가로수결리 소문 10. 공원결리 소문				감 봉 전 책 이 상 전 책 이 상	

구분란 " 11. 도시 및 전선행정 " 중 경제사유, 정제기준란에 9,1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구분	정 제 사 유	정 제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정제	감봉	전책	
	9. 광고물 지도단속 소홀					전책 이상	
	10.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 부당 처리				감봉 이상		

구분란 " 12 지하철운영 " 을 삭제하며

구분란 " 13 소방행정 "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정 제 사 유	정 제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정제	감봉	전책	
13.소방행정	1. 소방관련건축 동의업무 가. 소방시설 검토누락등 위법 부당처리 나. 작동기능불량 특안등 준공 검사때만				감봉 이상	전책 이상	
	2. 위험물설치허가 및 준공 위법 부당처리				감봉 이상		
	3. 업종구분, 면적확인등 소방대상물 관리 대만					전책 이상	
	4. 소방검사소홀로 대형화재 유발				감봉 이상		
	5. 기타 소방검사 업무소홀					전책 이상	
	6. 소방법 위반과 입건유보				감봉 이상		
	7. 기타 소방법 위반자 조치 미달					전책 이상	

<p>(별표 4) 정제양정 감경기준중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p> <p>부 칙</p> <p>① (사형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p> <p>② (정제양정)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진행중인 정제사건은 종전규정에 의한다.</p>	<p>1. 업체명 : 오양수산물식회사</p> <p>2. 소재지 : 서울특별시중구대명로1가 76-3</p> <p>3. 대표자 : 김 상 수</p> <p>4. 사료성분 등록사항</p>																								
	<table border="1"> <tr> <th>등록번호</th> <th>사료의종류</th> <th>사료명칭</th> <th>성분명</th> <th>성분량(%)</th> </tr> <tr> <td>2-4</td> <td>단미사료</td> <td>이여분</td> <td>조단백질</td> <td>55.0 이상</td> </tr> <tr> <td></td> <td></td> <td></td> <td>수분</td> <td>10.0 이하</td> </tr> <tr> <td></td> <td></td> <td></td> <td>염분</td> <td>4.0 이하</td> </tr> <tr> <td></td> <td></td> <td></td> <td>조지방</td> <td>26.0 이하</td> </tr> </table>	등록번호	사료의종류	사료명칭	성분명	성분량(%)	2-4	단미사료	이여분	조단백질	55.0 이상				수분	10.0 이하				염분	4.0 이하				조지방
등록번호	사료의종류	사료명칭	성분명	성분량(%)																					
2-4	단미사료	이여분	조단백질	55.0 이상																					
			수분	10.0 이하																					
			염분	4.0 이하																					
			조지방	26.0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고 시</p> <p>◎서울특별시고시제 234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사 료 성 분 등 록</p> <p>사료관리법 제 22 조 규정에 의하여 사료성분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 4. 9. 서울특별시장</p>	<p>◎서울특별시고시제 24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연 락 의 최 고 가 격 변 경</p> <p>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4 조에 따른 동력자원부 고시 제 87-13 호 ('87.4.8)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의 연 락 최 고 가 격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 4. 9. 서울특별시장</p>																								
다. 유																									
<p>1. 연 락 의 최 고 가 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th> <th>관</th> <th>중</th> <th>공장도가격</th> <th>판매소가격</th> <th>가정도가격</th> </tr> </thead> <tbody> <tr> <td>원</td> <td>형</td> <td>3.5</td> <td>49연단</td> <td>151 원 / 개</td> <td>168 원 / 개</td> <td>178 원 / 개</td> </tr> <tr> <td>원</td> <td>형</td> <td>3.6</td> <td>49연단</td> <td>160 원 / 개</td> <td>177 원 / 개</td> <td>178 원 / 개</td> </tr> </tbody> </table> <p>○ 공장도가격 160 원 / 개은 수입원보전자금 3 원 / 개이 포함되어 있음.</p>		구	분	관	중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가정도가격	원	형	3.5	49연단	151 원 / 개	168 원 / 개	178 원 / 개	원	형	3.6	49연단	160 원 / 개	177 원 / 개	178 원 / 개			
구	분	관	중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가정도가격																			
원	형	3.5	49연단	151 원 / 개	168 원 / 개	178 원 / 개																			
원	형	3.6	49연단	160 원 / 개	177 원 / 개	178 원 / 개																			

- 판매소가격 177 원 / 개은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12 원 / 개 (상, 하차비 각 1 원 / 개 포함) 과 판매소 수수료 5 원 / 개이 포함되어 있음.
- 가정도가격 187 원 / 개은 배달료 10 원 / 개이 포함되어 있음.

부 칙

1. 이 고시는 1987. 4. 9 일 00:00 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부러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7 ('86. 5. 17) 호는 폐지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17 호

1987 년도 제 2 종 전기공사업체수급 한도액 및 순위

전기공사법 제 23 조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1 조 4 항의 규정에 의거 1987 년도 제 2 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순위를 별첨과 같이 공고한다.

1987. 4. 9

서울특별시장

별첨 : 제 2 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

역 및 순위표 (생략)

※ 순위표 열람 장소 : 서울시 연로파 (731-6316 ~9)

◎서울특별시공고제 226 호

서울특별시 폐기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오물청소법이 폐지되고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시행 ('87. 4. 1)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를 폐기하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환경사무처리규칙 제 1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를 공고한다.

1987. 4. 9

서울특별시장

조 례 제 정 사 유

1. 오물청소법이 폐지되고 폐기물관리법이 제정 시행 ('87. 4. 1)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새로운 제도의 신설 및 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

변경되는 내용

1. 쓰레기 적환장에 관한 규정 신설
 - 쓰레기 적환장의 위치와 규모는 시장이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게 함.
 2. 쓰레기의 분티보관방법 신설
 -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이물질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함.
 - 연탄재는 이동식 쓰레기통에 담거나 포장하고 기타 쓰레기는 종이봉투나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함.
 3. 쓰레기 감량화에 관한 규정 신설
 - 모든 시민은 쓰레기감량화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여 시장은 자원의쓰레기의 수집정도와 쓰레기감량화제목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4. 업체의 대행기준 강화
 - 대행계약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매회 계약갱신시 집차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 가. 쓰레기 대행
- 투입할 수집운반차량의 적재론수별 형식별 대수(가능한한 압축식차량으로 확보)
 - 수하차대수(소형차량으로 지정 수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역에만 인정)

- 적환장의 위치와 면적(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인정)
 - 차고지·필 사무소의 소재지나. 분노대행 및 정화조 철쇄대행
 - 투입할 수집운반차량의 적재론수별, 형식별 대수(가능한한 흡인식차량으로 확보하고 알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쓰레기배출시설의 설치승인권자 규정
 - 50,000톤 미만은 시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었으므로 그 처리절차를 규정
 6. 축산폐수정화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 분뇨정화조에 준하여 처리
 7. 변소개량에 관한 규정 신설
 - 시장은 변소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시설의 확충등 여건조성과 변소개량공사비의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9. 정화조정소 불이행자에 대한 규격 강화

정소예고용지	—	정소주거
		1개월정
		↓
정소축구 및	—	정소주거
과래도·부곡역고		1개월정
		↓

과태료부과—청소축구일까지 붙이면서
↓
대집행예고 및 대집행(용량 10 적 이상)

9. 분노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정조치 규정
○ 처분받기 전에 계약한 공사는 그 대로 시행토록 관의 시장이 다른 설계·시공업자를 시공감리자로 지명하여 감독하게 함.

10.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와 분노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 시설의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을 각각 분리하여 규제

1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7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물 배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청(참조 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참반여부와 그 의견)
(2)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타 상세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청 청소과(731-6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22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공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 호(83. 1.

13)로 시설결정하고 시고 제 57 호(83.2.1)로 지적승인된 난곡길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판제도서는 판약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4. 9
서울특별시청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80-8 ~ 신림동 607-15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난곡길 확장공사
다) 사업규모: B=20m, L=380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청(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좌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인가로 부터 일차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 별첨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판제인의 주소, 성명: 별첨
야)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자)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람.

		토 지 조 서							
연 번	소재지지번	지 목	지 적	전 입 면 적	신 이 상 재 용 환	소 유 자	소 속 당	소 유 권 리 명	권 의 사
						주 소	성 결		
1	신림동 763-70	담	14	14 중 39.86 63 14 중 23.13 63		관악구신림동 1680-13	김용환		
2	" 763-71	대	111	111		"	"		
3	" 763-72	담	58	58 중 53 79 58 중 46 79		관악구신림동 763-22	임수빈		
						" 610-519	한중삼		
4	" 763-73	대	3	3		강남구논현동 105 동원(아) 2-1006 중구남대문로 2 가 9-1 (난곡직립) 강남구역삼동 69 삼익(아) 1-108 강남구반포동 1-98 강남(아) 2-509	임수빈 이종훈 김재우	가 등 기 근 처 당 근 처 당	국 민 은 행
5	" 763-74	대	13	13		관악구신림동 1436-3 경북예천예천남본 222 경기안양안양 97-3 전통(아) 121-311	고종환 권창용 고혜옥	가 등 기 근 처 당	
6	" 763-75	"	11	11		관악구신림동 763-20 " 624-13	김명환	가 등 기	
7	" 757-32	"	16	16		" 757-1 " 614-20 난곡새마을공고 구로구독산동 951	김용선 관악 단위 농업협동조합	근 처 당	
8	" 757-34	"	39	39		강남구압구정동산 6-1 한양(아) 11-705	박영자		
9	" 757-35	"	35	33		관악구신림동 587-105 " 602-13	정계호 이원기		
10	" 757-39	"	23	23		" 757-19	오옥순		
11	" 757-40	"	48	48		" 668-41	박상필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	입 면적	실제 면적	실제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자의 의결비명세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12	신림동 756-70	대	23	23				관악구신림동 756-1	이재열	
13	756-71	도	2	2				597	김규희	
14	755-21	대	41	41				755-2 중구남대문로2가9-1 (북천동지점) " (남쪽지점)	박영근 국민은행 " (남쪽지점)	근저당 " (남쪽지점)
15	755-22	대	87	87				도봉구월계동 2-2 48동 101호	권승남	
16	755-23	대	14	14				관악구신림동 755-12	한석재	
17	607-150	대	46	46				607-22	김홍정	
18	607-151	대	134	134				607-97	장삼곤	
19	607-152	대	68	68				관악구봉천동 13-44 " 1570-1	이규령 관악구청	압류
20	607-153	대	12	12				관악구신림동 597	김홍성	
21	607-155	대	24	24				607-35 " 614-20	홍성복 남쪽세마을금고	근저당
22	607-157	대	17	17				712-3	김수결	
23	607-158	대	5	5				607-30 남대문로2가9-1(공판동지점)	이영희 국민은행	근저당
24	607-159	대	7	7				관악구신림동 607-90 " 봉천동 1570-1	제계식 관악구청	압류
25	587-174	도	27	27				관악구신림동 587-148	김종수	
26	587-175	대	10	10				587-7	정인욱	
27	287-176	대	23	23				587-105 중구남대문로2가9-1	정영호 국민은행	근저당
28	587-177	대	32	32				관악구신림동 587-21 남대문로2가111-1(관악지점) 중구구경명동5-1(연산지점) 남대문로2가111-1(양성1부) 한국상업은행	김종현 한국상업은행 신학은행 한국상업은행	근저당 " (관악지점) " (연산지점) " (양성1부)
29	587-178	대	36	36				관악구신림동 587-107	김재자	
30	587-179	대	23	23				587-144	김영길	
31	587-106	도	7	7				790-16	김상희	
32	1680-50	대	81.2	81.2				마포구서교동 748-21	최영달	
33	1680-55	대	42.9	42.9				구로구사당동 789 한양 아파트 6-603	김성형	
34	1680-51	대	54.4	54.4				관악구신림동 597-10	남상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면적면 적 (㎡)	신제이 용상황	소유자 주소성명		소유권이 의권리명세
						관제인주소성명	김경애	
35	신림동 1680-52	대	53.4	53.4중 3/10 53.4중 2/10		관악구신림동 1680-13	김경애 김태연 김태중 김태선	
36	157-142	도	7	7		강서구방화동 611-12	박연수	
37	607-3	도	3	3		관악구신림동 715	정홍문	

물 건 조 서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신제이 용상황	소유자 주소성명		소유권이 의권리명세
					관제인주소성명	김경애	
신림동 75-35	주택및점포	벽돌스라브	36		관악구신림동 587-105	정병호	
757-36	주택및 리생활시설	근 벽돌조기와 시멘트와중	56		관악구신림동 602-13	이인기	
757-39	주택및점포	시멘, 벽돌 조 명육개	1층 28 2층 28		관악구신림동 757-19	2층 28	
756-70	근린생활 시설	연와조 벽돌와중	30		관악구신림동 756-1	이재일	
755-22	주택 - 점포	시멘트벽돌 조 명육개	1층 53 2층 39 지하 39		도봉구월계동 9-2 48 동 101 호	전승남	
607-151	주택및점포	철근콘크리 트 스투브	1층 99 2층 99 창고 57		관악구신림동 607-97	장상문	
587-178	주택및점포	연와조 시멘트와중	1층 27 2층 27		관악구신림동 587-1	김경자	
607-152	주택및점포	철근콘크리 트 명육개	1층 43 2층 44		관악구봉천동 13-44	이규영	
680-55	점포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10.8		구로구시흥동 789	김성형	
58-179	주택및점포	연와조 명육개	1층 19 2층 19		한양아파트 6 동 803 호 관악구신림동 587-144	김성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 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관제인주소성명	관제인주소성명		
신림동 757-40 1620-51	점포	새마을빌딩 영육개 철근콘크리트 영육개	1층11 2층11 1층25 2층25 지하25		관악구신림동668-41	박상일		
1680-52	주택및집포	새마을빌딩 영육개	1층48.4 2층36.6		관악구신림동597-10	남상학	미등기	
757-35 607-157 607-90	덤장 몰사시 몰사시 담장		1.8×5 1식 1식 1.8×7		관악구신림동763-1	김용환	"	
					" 587-105	정병호		
					" 712-3	김수경		
					" 607-90	제예식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 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관제인주소성명	관제인주소성명	
1	신림동 1680-26	영업권	정식품	1식		신림동 1680-26	김병구	
2	1680-10	"	신생약국	"		" 1680-26	이재호	
3	1680-10	"	인동가구	"		" 1680-10	장기식	
4	1680-10	"	가내공업	"		" 1680-10	이신우	
5	1680-10	"	담배소매	"		" 1680-13	김용환	
6	1680-13	"	팜주식품	"		" 1680-13	최종극	
7	1680-13	"	중앙공업사	"		" 1680-13	소재홍	
8	1680-13	"	한신라사	"		" 1680-13	신동권	
9	1680-13	"	평양미성	"		" 1680-13	최재규	
10	587-144	"	화원	"		" 587-144	김정화	
11	587-144	"	보하이약실	"		" 587-144	김영진	
12	587-144	"	담배소매	"		" 587-144	박옥년	
13	587-144	"	꽃집전기	"		" 587-144	박옥년	
14	587-107	"	제일부동산	"		" 587-144	김양조	
15	757-5	"	신일맞춤집	"		" 757-5	허효	
16	757-6	"	대흥서점	"		" 757-6	윤기모	
17	757-6	"	부일사	"		" 757-6	이순영	
18	757-6	"	가내공업	"		" 757-6	이림석	
19	757-19	"	대동식품	"		" 757-19	김진우	
20	757-19	"	신간만화	"		" 757-19	윤덕수	
21	757-26	"	보세신발	"		" 757-26	이영자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의 관리명세
						관제인주소성명		
		신림동						
22	756-1	영업권	신 삼 사	1 식		신림동 756-1	이광희	
23	756-1	"	영광상회	"		" 756-1	양금순	
24	755-9	"	합진부동산	"		" 755-9	김현민	
25	755-9	"	더업양화점	"		" 755-9	김명옥	
26	755-9	"	남일통닭	"		" 755-9	김명희	
27	755-9	"	남일다방	"		" 755-9	최창규	
28	607-119	"	비제바노	"		" 607-119	나상준	
29	607-119	"	지류양복점	"		" 607-119	유순자	
30	607-119	"	야생마	"		" 607-119	김기우	
31	607-97	"	문화서적	"		" 607-97	신미옥	
32	607-97	"	문자다방	"		" 607-97	김승근	
33	607-97	"	새운전기	"		" 607-97		

구 공 고

◎ 마포구공고제 32 호

매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39 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정열사용
기자재시공업 자격을 취소하였기 등
법 시행규칙 제 28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7. 4. 9

마 포 구 정 장

지정번호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취소일자	사 유
89	대평설비	염리동 9-57	정명희	1987.4.1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27 조 3 항동업시행규칙 24 조 3 항위반
42	광진설비	서교동 447-17	최동성	"	"
74	국물공영	" 440-5	조영규	"	"
70	대정설비	합정동 394-24	김동순	"	"
7	진양설비	연남동 239-1	김의용	"	"
60	대우난방	" 241-22	백철사	"	"
68	금양설비	" 487-40C	박현철	"	"
110	한미에너지	합정동 396-15	임강섭	"	"
118	삼현종합설비	성산동 572-666	이경우	"	"
3	대립정수회관	서교동 356-2	심재관	"	"



◎영등포구공고제 31 호

직인개각 및 폐기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3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인을 개각
및 폐기하였기 동규칙 제6조 규정
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7. 4. 9
영 등 포 구 청 장

1. 직인 개각 및 폐기내역
가. 동명 : 영등포제 2동
나. 직인명칭 : 일반사무용동장직인
다. 사용개시일시 : '87.4.20 09:00
라. 폐기일시 : '87.4.18 13:00



인 영	폐 기 인	개 각 인
		
공인명	영등포제 2 동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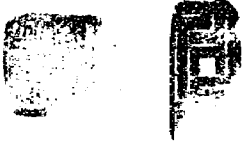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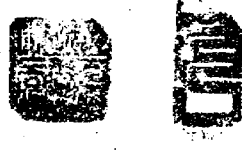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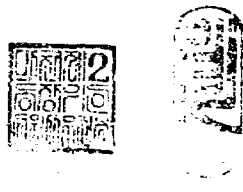
◎강동구공고제 29 호


관인 사용 승인



강동구 잠실 제 6 동장 (민원사무전
용) 관인 및 직인을 아래와 같이
폐기 및 개각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
가. 관인명 : 강동구 잠실 제 6 동장
관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나. 사용개시일 : 1987.4.14
다. 폐기처분일 : 1987.4.13
라. 관인의 인영 (폐기 및 개각인)
: 아래

1987. 4. 9
강 동 구 청 장

인 영	제 기 인	개 각 인
		
공인명	잠실제 6 동장인 및 제인	

배 기 인		개 각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문정동장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공인명	문정동장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삼사계 1동장관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공인명	삼사계 1동장관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마천계 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공인명	마천계 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계 기 인		개 각 인	
인 영	 	영	 
공인명	가락동장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공인명	가락동장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하원동장인 (일반사무용) 및 제인	공인명	하원동장인 (일반사무용) 및 제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마천계 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공인명	마천계 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인 영	계 기 인	계 각 인	◎ 1987년 4월 6일자, 경계 100호 도봉구 주택과장(직대) 지방행정주사 찬 구 회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한 도봉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새마을과장(직대) 지방행정주사 서 진 공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한 관악구 근무를 명함 ◎ 1987년 4월 6일자 경계 101호 신규임용 진 대 공 지방별정직 5급상당(비직편)에 임한 9호봉을 급함 서울시립대학교 근무를 명함 ◎ 1987년 4월 7일자 경계 102호 녹지사업소 김 영 회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3 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지방전기기원 최 상 민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제 2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인명	마천재 1 동장인 (일반사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사 령</div>			
◎ 1987년 4월 4일자 경계 96호 아동상담소 지방별정직 8급상당 장 기 선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87년 4월 6일자 경계 97호 신규임용 안 성 운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7급 2호봉을 급함 구로구 근무를 명함			
◎ 1987년 4월 6일자 경계 98호 구로구 지방농림기원보 김 양 수 종로구 근무를 명함			
◎ 1987년 1월 30일자 경계 99호 업무파 지방봉신원 (기능직 9등급) 조방자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외 2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위를 해제함			

<p>◎ 1987년 4월 7일자 형제 103호 도봉구 지적기원 김 영 권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소청 01161-300:87.3.25)에 따라 '86.12.30자 권혁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p>	<p>동대문구 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인봉 내무국 (국가안전조정총재본부) 근무 (1987.4.8~별도지시시까지)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연 익 훈 문화담당관 (문화행사추진반장) 근무</p>
<p>◎ 1987년 4월 7일자 형제 104호 도시계획과 지방토목기사보 이 병 화 치 수 파 근무</p>	<p>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정 권 새마을운동중앙본부(법민족올림픽추진서울시협의회) 파견 근무 ('87.4.8 ~ 별도지시시 까지)</p>
<p>◎ 1987년 4월 8일자 제 105호 새중문화회관 서무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성경남 서울시립대학교 근무</p>	<p>조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김 용 익 행정과 (종합상황실장요원) 근무</p>
<p>전자계산소 전산 1계장 지방행정사무관서강석 서울시립대학교 근무</p>	<p>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 노 명 원 의약과 (진급구명안내센터요원) 근무</p>
<p>내무국 행정사무관 류 경 기 전자계산소 전산 1계장 직무대리</p>	<p>◎ 1987년 4월 9일자 형제 106호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임 채 수 운수 1과파견 (87.4.9-10.31)</p>
<p>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김 재 정 새중문화회관 근무</p>	<p>중 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광 성 운수 1과 파견 (87.4.9-10.31)</p>
<p>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이 동 우 동대문구 근무</p>	

<p>용성구 지방행정서기 김 사 문 운수 1 과 파견 (87.4.9-10.31)</p>	<p>도봉구 지방행정서기 최 선 식 운수 1 과 파견 (87.4.9-10.31)</p>
<p>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박 용 제 운수 1 과 파견 (87.4.9-10.31)</p>	<p>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서 승 철 운수 1 과 파견 (87.4.9-10.31)</p>
<p>성북구 지방행정서기 임 성 순 운수 1 과 파견 (87.4.9-10.31)</p>	<p>마포구 지방행정서기 김 영 휘 운수 1 과 파견 (87.4.9-10.31)</p>
<p>서울특별시장</p>	